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20
----------	------

2013년 7월 4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3. 6. 19

나. 발 의 자 : 이형석 의원 발의

다. 회부일자 : 2013. 6. 24

라. 상정일자 :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13년 7월 4일 상정·의결(수정 가결)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이형석 의원】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한 번 이상 재정상황 등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서울시는 이에 따라 결산결과에 따른 재정운용상황 등을 매년 1회 공시해 오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경제상황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연 1회의 결산결과만을 토대로 서울시의 재정운용방향 설정 등에 어려움이 있는 바, 서울시의 세입예산에 대한 징수실적과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분기별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수시로 서울시의 예산집행에 대한 상황 등을 참조하여 적정한 예산조치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장은 세입예산의 징수현황 및 사업별 세출예산의 집행상황을 분기별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 박 노 수)

가.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 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가 전년도에 심의·의결한 예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으로 하여금 당해 연도 집행단계에서 세입예산의 징수현황 및 사업별 세출예산의 집행상황(이하 “세입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 보고서”)을 매분기마다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기하는 한편,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서울시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된 것임.

나. 시장에 대한 세입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상황 제출의무 부과

-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60조 등에 따른 재정공시 제도¹⁾와는 별개로 당해 연도 예산 집행과정에서 분기별로 세입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예산운용에 대한 의회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며 예산의 변칙적 집행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서울시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용과 관련하여 지방의회는 예산안 심의·의결권과 결산 승인권을, 단체장에게는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전속적인 권한으로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권한의 분리와 배분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조례의 규율범위에 있어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상호간에 전속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
- 대법원에서도 지방의회와 단체장은 각기 그 고유권한을 행사

1) 「지방재정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부터 제70조 및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제21조 등에 따라 매년 8월에 서울시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재무보고서 등 재정 운용 상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시해 오고 있음.

하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견제의 범위 안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2001.12.11. 선고 2001추64),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2011.4.28. 선고 2011추18)하고 있음.

- 본 개정 조례안의 경우 시장에게 세입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시장에게 부여된 세입징수와 세출예산 집행 등 예산집행권에 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의 범위 안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법률상 큰 무리가 없어 보임.
- 더불어 본 개정 조례안의 경우 시장에게 당해 연도 예산 집행 과정에서 그 진행 상황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어떠한 사전적·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본 개정 조례안이 시장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²⁾

2)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동일하게 판시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장에 대한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하도록 한 동 조례 제57조에 대하여, 시장이 산하기관장을 임명하고 난 후에 소관 상임위에서 그 산하기관장의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원고가 검증보고서의 내용에 기속되거나 그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시장의 인사권에 관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불과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2012.12.26. 2012추91)

- 다만,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10조 제2항에서 의회는 시장에게 매분기별로 당해 연도 예산집행실적 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40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세입 징수현황과 예산 집행에 관한 자료 등을 수시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개정 조례안이 위 조항들과 일부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다. 세입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상황 제출 시기 및 횟수

- 본 개정 조례안은 세입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 보고서를 매분기마다 의회에 정례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의회차원에서 예산집행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의적절한 대처와 처리방안을 강구할 수 있어 의회 견제기능을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현재 「지방재정법」 제60조 등에 따라 매년 8월 서울시의 재정 운용 상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시하고 있고, 매년 「지방자치법」에 따라 확정된 예산과 결산 승인 사항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매분기별로 세입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개정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제출 횟수를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한편,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서울시(기획담당관) 의견은 「지방자치법」 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등 현행 법령에 따라 수시로 집행부의 재정운영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상정(심의)을 보류함이 타당하나, 동 조례 제55조의2를 신설한다면 업무추진 및 자료의 효율적 작성을 위하여 자료제출 주기를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제출토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함.

라. 세입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상황 제출의무 대상지에 교육감 포함여부

- 본 조례 개정안은 시장에게만 세입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3년 기준으로 약 7조 4천억원(서울시예산 규모의 약 32%)에 이르는 서울시 교육청 예산을 감안할 때, 서울시 교육감에게도 당해 연도의 세입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420
----------	------------

제안년월일 : 2013년 7월 4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 서울시와 교육청의 재정운용에 대한 의회차원의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를 위하여 세입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상황을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조정하고, 그 제출의무 대상자를 교육감까지 확대하는 한편, 서울시 조직개편을 위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2013년 6월 20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현행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기구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세입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상황을 반기별로 제출토록 하되, 그 대상자를 교육감까지 확대함(안 제55조의2 신설).
- 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정보화기획단”을 “정보기획단”으로 변경함(안 제33조제1항제5호의 자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없 음.

나. 예산조치 : 없 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5조의2 중 “시장”을 “시장 및 교육감”으로, “분기별”을 “반기별”로 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자목 중 “정보화기획단”을 “정보기획단”으로 한다.

수정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신 설〉</p>	<p>제55조의2(예산집행상황 등의 제출) 시장은 세입예산의 징수 현황 및 사업별 세출예산의 집행상황을 분기별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5조의2(예산집행상황 등의 제출) 시장 및 교육감은 세입 예산의 징수현황 및 사업별 세출예산의 집행상황을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3조(상임위원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 ~ 아. (생략) 자. <u>정보화기획단</u>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제33조(상임위원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4. (현행과 같음)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u>정보기획단</u> 소관에 속하는 사항</p>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예산집행상황의 등의 제출) 시장 및 교육감은 세입예산의 징수현황 및 사업별 세출예산의 집행상황을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자목 중 “정보화기획단”을 “정보기획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55조의2(예산집행상황 등의 제출) 시장 및 교육감은 세입예산의 징수현황 및 사업별 세출 예산의 집행상황을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3조(상임위원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4. (생 략)</p> <p>5. 문화체육관광위원회</p> <p>가. ~ 아. (생 략)</p> <p>자. <u>정보화기획단</u>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제33조(상임위원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4. (현행과 같음)</p> <p>5. 문화체육관광위원회</p> <p>가. ~ 아. (현행과 같음)</p> <p>자. <u>정보기획단</u> 소관에 속하는 사항</p>